

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88
------	-----

2007. 9. 10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8월 17일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8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서울특별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(2007년 9월 10일) 상정, 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 : 정순구 산업국장)

가. 제안 이유

-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시범영농자금 용자심사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술담당관을 삭제 하려는 것임.

나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기타
 - (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 - (2) 입법예고 :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, 입법예고 생략
 - (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, 규제사무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석수)

가. 개요

-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시범영농자금 용자심사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술 담당관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결과

- 용자심사회의 당연직 위원에 기술담당관을 삭제하려는 것은(안 제7조제2항제2호)
 - 서울특별시 직제개편(2005.1.5)에 의한 정원조정으로, 당초 지도직 26명(지도관 2, 지도사 24)의 정원이 23명(지도관 1, 지도사 22)으로 축소되면서 지도관 1명(센터 기술담당관)을 축소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
 - 또한, 지난 2003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 상당에서 5급 상당으로 하향조정(2003.8.29 제144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) 하였음.
 - 그러나,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농산물로 만드는 농산물 가공교육, 시민학습장 운영 등으로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, 「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는 등 도심속에서 농업의 역할이 중대되고 실정임.
 - 따라서, 향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(5급 → 4급) 상향조정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 밖에 조례제명을 “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”로 한 것과, 제3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13인”을 “13명”으로 한 것은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”(법제처 2006.12) 을 적용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 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